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588호 2017. 4. 19.(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7-49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 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7-491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대상지 선정 공고 ..... 5

거창군 공고 제2017-505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  
안 입법예고 ..... 6

거창군 공고 제2017-515호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  
시엄 참여기업 모집(연장) 공고 ..... 12

거창군 공고 제2017-516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예고 ..... 27

거창군 평생교육센터 공고 제2017-9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  
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5

회 관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4. 1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2길 14-5 외 2건(부여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86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구산2길 14-5	2009-04-01	2017-04-19	마을 곁에 있는 아홉골 에 연유하여 붙여진 자 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402-1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303-134	2009-04-01	2017-04-19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58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184	2009-07-02	2017-04-19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7-491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7년 4월 12일

###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농지(전) 조성
2. 사업지구명 : 북상 산수지구
3.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23-4(임)
4. 사업시행면적 : 4,952m<sup>2</sup>

토지의 표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북상	산수	산23-4	임	9,685m <sup>2</sup>	4,952m <sup>2</sup>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50,000천원(부지조성 45,000천원, 작물시설 5,00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허가)일부터 24개월
8. 사업시행자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6
9. 이의신청기간 : 2017. 4. 12. ~ 2017. 5. 12.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연령에 맞는 장난감 대여로 영유아의 창의력 향상과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난감 은행을 설치하고,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설치, 기능 (안 제2조~제4조)
- 회원가입 대상과 의무(안 제5조~제6조)
  - 가입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
- 연회비의 납부와 감면(안 제8조~제9조)
  - 연회비 : 20,000원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1~3급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이용제한과 회원등록 취소(안 제10조~제11조)
- 장난감 등 기증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4. 제정조례안 : 붙임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제정 조례안』

#### 5. 입법예고 기간 : 2017. 4. 14. ~ 2017. 5. 4. / 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055-940-3152, fax 940-308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여성아동담당 **☎ 940-315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군수는 장난감은행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난감은행의 명칭은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라 하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1층)”에 둔다.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용 장난감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원가입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등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 기간 및 수량 등)**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기간과 수량, 장난감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난감은행 운영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 등,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장난감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11조(회원등록 취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 희망자
3. 장난감 등을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장난감 은행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한 사람

**제12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영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공고 제2017-51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고 제2017 - 21호(2017.1.13.)의 「신·재생에너지보급 -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설치 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4. 18.

거 창 군 수

###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 1. 사업개요

가. 목 적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공동 참여기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나. 사 업 명 :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다. 대 상 : 거창군 기초면, 신원면, 남상면 일원(개인주택, 공공 및 민간건물 등)

※ 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 라. 사업내용

1) 감악산풍력발전단지 주변마을 및 가조온천지구내 에너지자립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 지원 대상 규모와 내용에 맞는 에너지원 발굴

2) 사업의 타당성 및 계통연계, 종합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제시

3) 에너지원 종별 적격업체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대상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바.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내용에 따름

## 2.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28.(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사무실)

다.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별첨 2>

- 용량산출근거, 사업비 조달계획, 관련법 저촉여부 포함

2) 전체 사업계획 조감도(A3규격, 별도 형식 없음) 1부

3) 설치예정 장소 및 건물 사진(A4규격, 별도 형식 없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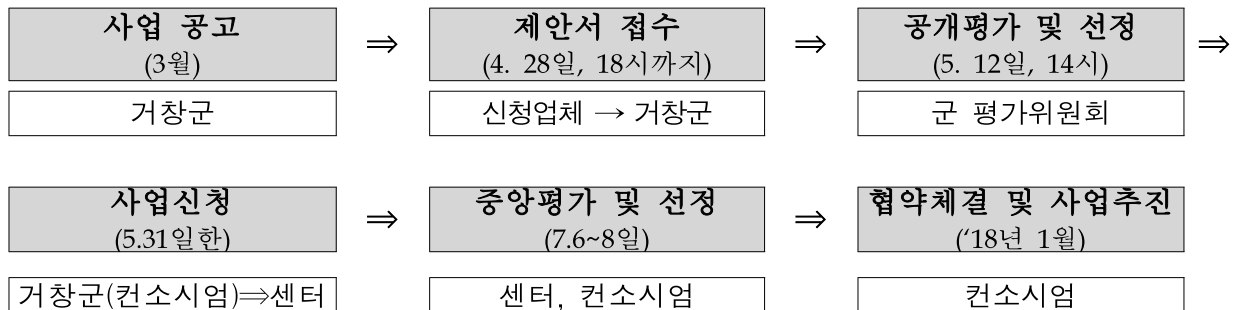
4)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인증제품 및 시험성적서 포함) 및 단가 1부

5) 평가지표 증빙자료 각 1부

라. 문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055-940-3713)

3.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필요시 발표 요청함)

## 4.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5. 특기사항

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참여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 공모신청

나. 본 컨소시엄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미선정 시 컨소시엄은 자동으로 파기됨

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중앙평가에서 선정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 6. 의무부여 및 지원제한

가.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

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나. (참여기업 자격) 2017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 대상으로 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

다. (설비 시스템 설계) 사업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수요부하와 원별 적정 설치용량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 시스템 설계 수행

1) (설계범위) 입지 및 설치여건 분석, 전기사용량 등 부하분석, 계통 연계성 분석, 에너지원별 설치용량 분석, 인허가 조건·절차 등 조사

\* 수요처 전기요금, 냉난방 비용 등을 근거로 적정 설치용량을 설계하여 과다 용량 설치 방지

2) (최적 설계결과 검증) 필요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원별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용량 등 사업계획서 조정·보완 가능

라.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태양열(집열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우측중앙 “인증제품” 메뉴

바.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해당시설 및 장비의 검수·확인 후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sup>+</sup>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사. (사후관리) 본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주체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며, 컨소시엄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관련 지침에 따라 센터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함

#### 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1) 사업대상지 내 가동되고 있는 전 설비의 운전현황에 대한 확인·점검·제어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설비의 개별 현황판과 웹 기반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구축
- 2) 운영기간 동안 설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너지 생산현황)와 운전경험(고장 원인) 등 Track-record 내용을 센터에 제출

### 8. 기타 사항

- 가. 융복합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절차, 사업비 확정 등의 제반 추진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1호(2017. 1. 13.)의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제안서는 컨소시엄 구성 업체별로 한건에 한하며, 추가제출, 수정, 변경, 보완이 불가함
- 다.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컨소시엄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마.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별 첨 1.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2. 융복합 지원사업 업체 공모 신청서  
3.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4.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별첨 1 >

##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 1.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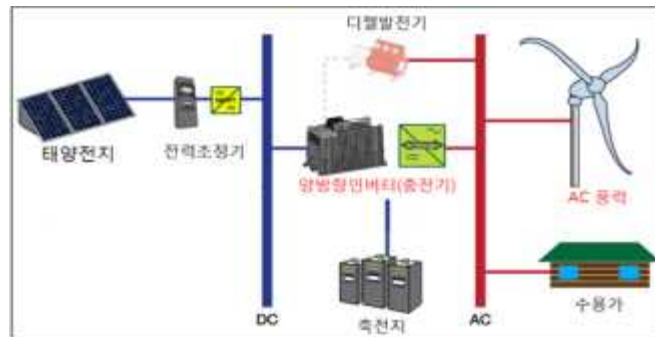
○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 (사례) (2013년) 전남 삼마도, 인천 백아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완료

(2014년) 인천 덕적도, 전남 상태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2015년) 제주 비양도, 인천 지도, 충남 죽도, 안산 풍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진행 중



### 2.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감점 설치대상) 마을회관을 포함한 주택으로만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처리

\* (권고 설치대상) 주택,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체육관 등) 및 근린시설 등을 포함하는 사업

\* (사례) 고창군 제로에너지타운 : 29가구에 태양광, 태양열·지열을 가구별로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 에너지 사용 최소화)

### 3.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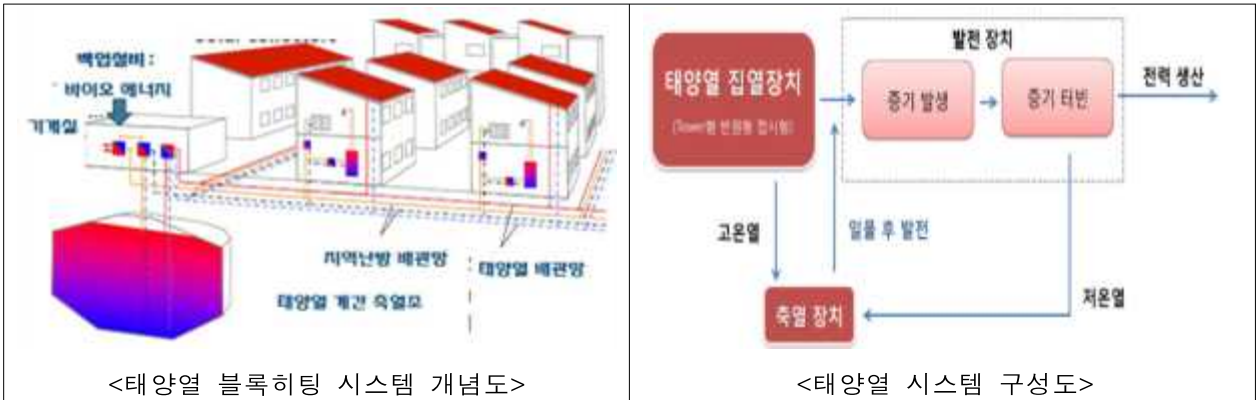
○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특징) 설비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용량 규모(최소 4천~10천㎡)의 집열 면적이 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열설비, 지열 히프펌프, 바이오연료, 우드펠릿, 폐기물 등 他신재생 히팅시스템과 복합 구성 가능 (1MW 당 필요한 부지 = 28.3km<sup>2</sup>)

· (지역난방지역) 태양열로 발생한 온수를 열 공급관에 연계하여 공급



- (지역난방 비연계지역) 열 공급관, 펌핑·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별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공급
- 필요에 따라 지열시스템, 우드칩 보일러 등을 보조 설비로 설치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추진
- \* (사례1) 스페인(Andasol-1~3) : 510천㎡ 면적의 60만개 V자형 집열관 태양열 활용하여 연간 약 150MW 전력 생산
- \* (사례2) 독일 크라이스하임(Crailsheim Hirtenwiesen) : 7300㎡ 압력 탱크 및 시추 열에너지 장치를 이용, 260가구 및 근처 학교 및 체육관 온수공급



#### 4.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 (특징) 지역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공급 가능
- \* (사례1)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타운 : 울산지역 산업체의 부생수소를 활용하여 주택 140가구, 공공·상업건물 3개소 등에 연료전지(총 195kW) 설치·지원('12년도)
- \* (사례2) 축산분뇨 바이오 가스 등 신규 연료원을 활용한 수소타운 : 축산농가, 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를 통한 부생수소를 연료 원으로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지원
  - 독일(윤데마을) : 정부·금융기관·주민참여를 통한 중앙집중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 메탄가스 발전시설 연계 하여 연간 7500GWh 전력 및 3,500GWh 열 생산
  - 벨기에 : 가축분뇨 과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분뇨중개시스템('95) 도입



## 5.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 (내용)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희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하고 인근 마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설비를 통해 전기·난방요금 절감

\*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유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지원사항 없음

\* (사례1) 발전소 인근 마을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절감효과를 창출하고, 발전소의 폐열, 폐수 등을 활용하여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등 농가 수익창출과 연계하여 기피지역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사례2) 한센인마을, 폐광지역 등 경제취약 지역에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신재생설비를 구축하고, 인근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 별 첨 2 > 사업계획서 양식

2018년 융·복합지원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작성 자	소 속		전 화	
	성 명		핸드폰	
	Fax		E-mail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지원대상 모델	모델번호		모델명	
4. 설치장소	○ 장소명 : ○ 소재지 :                    시(군·구)                    리(동)			
5.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 (기관명) - (역할)			
6. 세부사업	구 분	호수 (개소)	용 량 (kW, m <sup>2</sup> )	설치대상 (주택, 상업·공공건물)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합 계			

## 7. 사업비 신청내역

###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 간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			
		-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나.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총사업비
신·재생 설비			
보조 설비			
설 계 비			
모니터링비			
합 계			

※ 시스템 주요설비 설치 사양과 단가 첨부 (첨부서류 3번 관련)

## 8. 사업내용

### 가. 사업추진방법

- 사업의 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시설규모(용량 도출 근거) 및 설치 예정지역
- 사업비 산정과 분담, 자체 부담 사업비 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등

###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용·복합 사업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 사업의 공사·관리·운영계획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

### 라. 사후관리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과 점검주기
- 유지보수 예산확보와 A/S 발생 시 처리방법
-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기간 : 5년

### 마. 사업수행 능력

- 참여기관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관특성 등)
- 사업 계획 상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 9. 용·복합 기대효과

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연간 생산량과 화석에너지 대체량(toe/년)

나.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 별첨 3 >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계량 평가	시공능력	<input type="checkbox"/> 기술인력 보유현황	6	25	담당자 평가
			<input type="checkbox"/> 기술인력 근무경력	4		
			<input type="checkbox"/> 시공실적	6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4		
		사업비산정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율	5		
		에너지원	<input type="checkbox"/> 우선지원대상 에너지원(가점)	(5)		
		지역업체	<input type="checkbox"/> 경남지역업체 포함여부(가점)	(5)		
	사업선정	<input type="checkbox"/> 설치대상 시설의 단일성(감점)	(-5)			
	비계량 평가	사업추진 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7	70	평가 위원 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7		
			<input type="checkbox"/>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7		
		인프라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7		
			<input type="checkbox"/> 관련법규 저촉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7		
			<input type="checkbox"/>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7		
사업추진 구체성		<input type="checkbox"/>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7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공사·관리 운영계획의 구체성	7				
	<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7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7				
가격평가	발전량 대비 소요 사업비	년간발전 예상량(W) / 사업비(천원) × 100	5	5	담당자 평가	
합 계			100	100		

※ 동점자 처리방법 : 2017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 참여율로 선정

## <참여기업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6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태양광	태양열	기 타
6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① 8인 이상	6	6	6
	② 7인	5	6	6
	③ 6인	4	5	6
	④ 5인	3	4	5
	⑤ 4인	2	3	4
	⑥ 3인 이하	1	2	3
	나. 기능사			
	① 8인 이상	3	3	3
	② 7인	2	3	3
③ 6인	1	2	3	
④ 5인	0	1	2	
⑤ 4인 이하	0	0	1	

### ○ 기술인력 근무경력(4점)

- 산업기사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4점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4점 한도	가.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600개월 이상	① 500개월 이상	4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②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3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③ 100개월 이상~300개월 미만	2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1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 기술인력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500개월 이상	① 400개월 이상	2
②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②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1	
③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	

○ 시공실적 배점기준(총점 6점)

- 설치용량(4점)

구분	태양광(kW)	태양열(m <sup>2</sup> )	지열(kW)	기타(kW, m <sup>2</sup> )	배점
4점 한도	3,000 이상	6,000 이상	6,000 이상	100 이상	4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50~100미만	3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20~50미만	2
	1,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20 미만	1

- 설치개소(2점)

구분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배 점
2점 한도	300 이상	200 이상	50 이상	100 이상	2
	300 미만	2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1

○ 기업신용도 배점기준(총점 4점)

구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4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4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0, BBB-, BB+, BB0	3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	2
	기업신용평가등급 B0이하	1

○ 신재생에너지 예산 투입비율 배점기준(총점 5점)

구 분	전체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투입비중	배 점
5점 한도	100%	5
	95%이상 ~ 100%미만	4
	90%이상 ~ 95%미만	3
	85%이상 ~ 90%미만	2
	80%이상 ~ 85%미만	1
	80%미만	0



○ 비계량 및 가격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분(평가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배점					
			수	우	미	양	가	
합 계	75							
비계량평가	사업 추진 방법	21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7	6	5	4	3
			□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사업기간의 적정성	7	6	5	4	3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 및 참여율의 적정성	7	6	5	4	3
	인프라 적정성	21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특성 반영도	7	6	5	4	3
			□ 관련법규 저촉여부, 처리방안의 적정성	7	6	5	4	3
			□ 부대 인프라시설의 정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성	7	6	5	4	3
	사업 추진 구체성	21	□ 기술적 타당성, 최적화 및 사전조사 반영도 등	7	6	5	4	3
			□ 사업의 공사·관리 운영계획의 구체성	7	6	5	4	3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계획의 구체성	7	6	5	4	3
	사후 관리	7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발생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7	6	5	4	3
가격평가	5	□ 1순위 수, 2순위 우, 3순위 미, 4순위 양, 5순위 이하 가	5	4	3	2	1	

○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 평가 입찰 참가업체 수별 등급배분기준

평가참가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1개	심사위원 절대평가				
2개	1	1			
3개	1	1	1		
4개	1	1	1	1	
5개	1	1	2	1	
6개	1	1	2	1	1
7개	1	1	3	1	1
8개	1	2	3	1	1
9개	1	2	3	2	1
10개	1	2	4	2	1

## 시공능력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중 1개보험 가입서류
-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신재생에너지지원별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 시공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확인서로 제출가능(설치확인서의 개소가 많을 경우 리스트로 작성 첨부 가능)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기업신용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사업계획서 접수일 이후인 것에 한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코리아크레딧뷰로, 이크레더블

※ 위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정부 보급사업 참여 시공기업 선정 기준 준용

거창군 공고 제2017-516호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에 도시림 등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민간 참여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산림과)
- 전화 : 055-940-3482, 팩스 : 055-940-3459, 이메일: cllay@korea.kr

붙임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	--------

제출연월일	2017. 4. .
제 출 자	산림과장

## 1. 제안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현행 조례안에 법적근거가 없는 「가로수위원회」를 가로수 및 도시림에 관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에 도시림 등 전문가나,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의 민간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 2. 주요 내용

- 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맞게 정함. (안 제4조, 제5조)
- (1) 위원회 구성인원을 6명이상 15명이하로 정함
  - (2) 위촉위원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도록 함
  - (3) 위원회 심의사항에 연장 200m이상 가로수 제거하는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7. 4. 18 ~ 2017. 5. 8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에 가로수”를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로 한다.

제4조 제목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시림 및 가로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상 15명이하의 거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3항 각호 외의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1호·4호·5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승인사항 중 연장 200m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u>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 및 가로수</u> ----- -----.</p>
<p>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도시림 및 가로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상 15명이하의 거창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1호·4호·5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1.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2. &lt;생략&gt;</p> <p>3. &lt;생략&gt;</p> <p>&lt;신설&gt;</p>	<p>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p>



<신설>

④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신설>

<신설>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승인사

항 중 연장 200m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2.] [법률 제14360호, 2016.12.2., 일부개정]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6.3.] 제20조의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전문개정 2007.12.21.]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8일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2011.3.7.>에 관한 사항

(1)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4.3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평생교육센터 ☎ 055-940-8702, FAX 055-940-87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거창군청 평생교육센터(☎ 055-940-8702, FAX 055-940-8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평생교육센터
입 안 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평생교육센터소장 유 태 정
	팀 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신 용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표 주 희 (☎940-870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 조례 제2297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부칙</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u> 제2조제2항 제1호, 제2호 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 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 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 함되는 것으로 본다.</p>